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4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2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채재묵)

가. 제안이유

-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2조 6호)
- 대금e바로시스템 의무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제7조의2)
- 포상금 지급기준의 상충된 내용 삭제(제17조제3항)
- 포상금 지급기준 조항 연결이 잘못된 내용을 수정(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각 자치구에 보급하였는바, 영등포구의 “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6호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의 규정으로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 ※ 영등포구 지급 공사대금 중 하위사업자(하도급자, 장비·자재업자, 노무자) 몫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출제한 및 하위사업자 지정계좌로만 이체 지급 가능.
- 안 제7조의2에서는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간 대금지급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수시로 지급확인시스템을 확인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공사대금 어음 지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노무자 간 공사대금이나 임금 지불 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고,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현금이 지급되므로 임금 체불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업계의 공정한 계약이행 관행 정착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치입법으로 사료되며, 입법 체제나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7 호
----------	---------

제출연월일 : 2016.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은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신설 하고,
- 포상금 지급기준의 상충된 내용과 조항 연결이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6호 신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신설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다. 제17조(포상금 지급기준) 상충된 내용을 정비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제20조(포상금 지급 및 심의) 포상금 지급은 제5조제1항의 지급기준을 제17조제1항으로 수정(조항 연결이 잘못된 것을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 2. 25 ~ 3. 16,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5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제1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